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채용 공고

전주시 노사관계 발전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할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무국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위	직 종	근무부서	채용인원	비고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전담인력	사무국장	계약직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1명	

※ 근거 :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2 주 요 업 무

수행업무	
사무국장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운영·관리 전반 ○ 노사갈등 및 분쟁 조정 등 노사관계 관련 업무 전반 ○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업무 등

※ 노사민정협의회 내부협의를 통해 상기업무는 조정될 수 있음

3 근로조건 및 보수

구 분	계약기간	보 수*	근무시간	근무장소
사무국장	채용일부터 2년	월 3,101,500원 (6급 7호봉 상당)	주 5일, 40시간 (월~금 09:00~18:00)	전주시근로자 종합복지관

* 당해연도 별정직공무원 6급 7호봉 기준 기본급,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별도 지급

** 보수 및 복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름

4

응 시 자 격

가.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인 자

나.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로 되어있는 사람

다. 성 별 : 구분 없음

※ 남자의 경우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라. 제한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취업)의 제한이 없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마.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자격요건의 해석은 전주시에 따름

채용분야	채 용 자 격 ※ ①, ②, ③ 하나만 충족하여도 가능
사무국장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산하, 출연, 출자기관포함)으로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으로 노사업무관련 2년이상 근무한자 ②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③ 법인 또는 단체에서 노사 또는 고용업무 관련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시 험 일 정

가. 응시원서 및 서류접수

- 1) 공고기간 : 2026. 10. 12. ~ 10. 23.(12일간)
- 2) 접수기간 : 2026. 10. 20. ~ 10. 23.(4일간)
- 3) 접수장소 : 전주시청 일자리정책과(노사일자리지원팀)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현대해상 빌딩 12층
-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 가능

※ 평일 근무시간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가능

나. 서류전형 결과발표: 2026. 10. 26.(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다. 면접시험 : 2026. 10. 27.(예정) / 일정·장소 개별통보

라. 합격자 발표 : 2026. 10. 30.(금)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

6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 적합성(경력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 자격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등을 서면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근무자로서의 자세 등의 적격성을 면접시험 채점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더라도 결격사유조치, 신원조사 결과 등을 통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7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

나. 이력서 1부 (소정양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A4용지 1장 내외로 작성)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마. 최종 학력(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바.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사.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해당 분야 경력임이 확인되도록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전임 및 비전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불인정하며 회사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아.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소정양식)

※ 경력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단,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서류여야 함)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원서 접수일, 면접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면접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추후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스스로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바람

다.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라. 경력증명 원본, 자격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 또는 자격은 인정하지 않음

마.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바.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사. 접수된 서류는 구직자의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의 요구 시 30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인사관리를 위해 자체 보관함

아.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되었거나 기재된 내용(학력, 관련분야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자.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차.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음
- 카.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타. 기타 채용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 노사일자리지원팀 (☎063-281-2553)으로 문의 바랍니다.